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09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7일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단서 신설>	제10조(적용 제외)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및 제5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5. (생략) ②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소규모 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일부 사업, 1주간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함)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공무원과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실업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국가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특히 사무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해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실제로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은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되었으나³⁾, 사립학교 직

1)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2) 허민숙,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4. 7.

3)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8. ~ 13. (생략)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

원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제4장 및 제5장에 한정4)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립학교법령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립학교법 체계 안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5).

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 ⑨ (생략)

- 4) 고용보험법 제4장은 실업급여, 제5장은 육아휴직 급여 등(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장임.
- 5) 이러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114호 및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4호)이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동시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출산 및 육아를 계획하는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2020년 3조 8,666억원에서 2024년 3조 5,0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근로자 계정,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수입	198,171	199,831	187,371	185,117	191,862
	지출	204,566	210,463	180,507	170,407	186,253
	수지	△6,395	△10,631	6,864	14,709	5,609
	적립금	66,466	55,828	62,611	77,319	82,918
실업급여 계정	수입	136,287	148,141	135,675	143,879	149,105
	지출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2
	수지	△2,573	4,003	△5,650	573	△2,437
	적립금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61,884	51,691	51,696	41,238	42,757
	지출	65,706	66,325	39,182	27,101	34,711
	수지	△3,822	△14,634	12,513	14,137	8,046
	적립금	27,800	13,163	25,658	39,794	47,83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일·가정 양립 확산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체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하여 육아를 계획하는 사람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